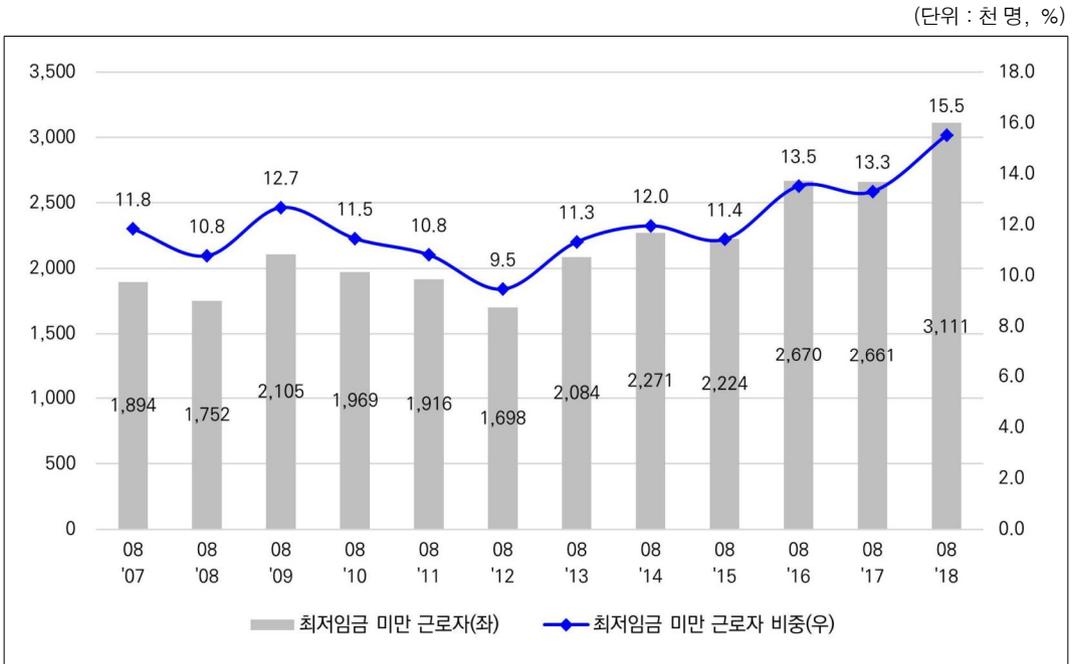


#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7,530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11천 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9천 명 증가(2017년 263천 명 증가)에 그친 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450천 명 증가하여 최저임금 미만율(15.5%)은 큰 폭(2.2%p)으로 상승함.

[그림 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각 연도.

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이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임.

-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근로조건<sup>2)</sup>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분포는 산업의 성격과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며,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산업별로 편차가 큼(표 1 참조).

〈표 1〉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

(단위 : 천 명, %)

	2017			2018		
	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농림어업	122	52	42.8	115	46	40.4
제조업	4,018	204	5.1	3,941	272	6.9
전기·가스·증기	67	2	2.2	71	0	0.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7	4	3.4	124	10	7.8
건설업	1,513	111	7.3	1,584	170	10.7
도매 및 소매업	2,321	420	18.1	2,251	486	21.6
운수 및 창고업	783	107	13.6	791	124	15.7
숙박 및 음식점업	1,448	499	34.5	1,362	586	43.1
정보통신업	718	11	1.5	784	23	2.9
금융 및 보험업	758	28	3.6	804	43	5.4
부동산업	366	80	21.8	356	76	2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01	19	2.2	925	32	3.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306	246	18.9	1,193	251	21.0
공공행정	1,103	149	13.5	1,131	156	13.8
교육서비스업	1,538	118	7.6	1,505	128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52	309	16.7	1,998	348	1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273	73	26.7	289	74	25.6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	722	191	26.4	756	256	33.9
전 체	20,006	2,661	13.3	20,045	3,111	15.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각 연도.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과 복지혜택 수혜율(퇴직금 수혜율, 상여금 수혜율, 유급휴가 수혜율, 시간외수당 수혜율)임.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43.1%), 도매 및 소매업(21.6%),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21.0%)인 반면, 정보통신업(2.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낮음.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6천 명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88천 명 ↑)하였으며, 주로 임시직(67천 명 ↑), 남성보다는 여성(71천 명 ↑), 그리고 5인 미만(68천 명 ↑) 소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함.
  - 숙박 및 음식점업과 함께 대표적인 내수 의존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도 임금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70천 명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천 명 증가하였는데, 임시직뿐만 아니라 상용직도 41천 명(40세 이상 연령층에서 30천 명 ↑) 증가함.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역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함(2018년 5천 명 ↑, 2017년 27천 명 ↓). 이는 임시직, 여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 전환한 영향이 큼.<sup>3)</sup>
- [그림 2]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관리지원임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복지와 같은 근로조건이 제조업과 전산업 평균에 비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sup>4)</sup>
-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임금근로자의 약 40% 내외만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복지혜택 또한 전 항목이 평균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2.2%p ↑), 고용보험 가입률(1.9%p ↑), 건강보험 가입률(2.6%p ↑), 퇴직금 수혜율(3.9%p ↑), 시간외수당 수혜율(0.5%p ↑)이 2017년보다 증가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은 높아졌으나 근로조건 지표들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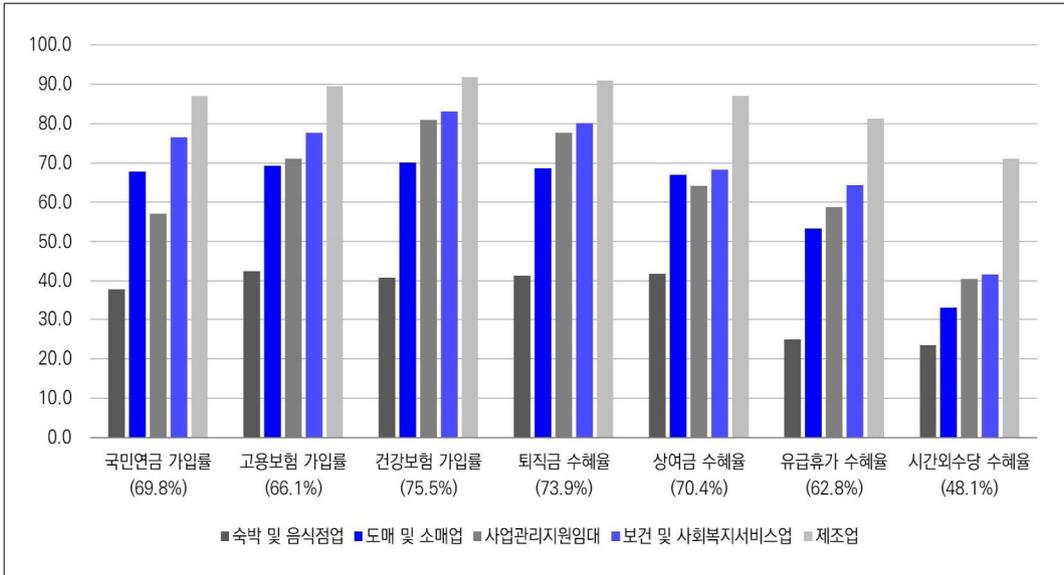
3) 임시직(2018년 6천 명 ↑, 2017년 12천 명 ↓), 여성(2018년 8천 명 ↑, 2017년 29천 명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2018년 12천 명 ↑, 2017년 17천 명 ↓)에서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함.

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63.1%(2018년)가 비정규직이며, 이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역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혜택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에 더해 비정규직은 대부분의 근로조건 지표에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

5) 이는 전산업 평균보다 개선폭이 큰 편임. 2018년 전산업 기준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복지혜택 수혜율은 전년동월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0.7%p, 고용보험 가입률 0.4%p, 건강보험 가입률 1.3%p, 퇴직금 수혜율 1.3%p, 시간외수당 수혜율 0.4%p 상승함.

[그림 2] 산업별 임금근로자<sup>6)</sup>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복지수혜율

(단위 : %)



- 주 :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함.
- 2) 고용보험 가입률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된 수치임.
- 3) ( ) 안은 전산업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각 연도.

– 서비스업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혜택 수혜율은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전년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0.4%p 감소한 것 외에 다른 근로조건 지표들은 모두 개선됨.

○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고용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임시직(60.1%), 여성(62.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41.1%)에 집중되어 있음.<sup>7)</sup>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임시적인 경우 약 15%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의 여타 근로조건 지표<sup>8)</sup>들도 낮은 수준임.
-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처우를 받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자

6) 전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숙박 및 음식점업(57.6%), 도매 및 소매업(84.3%), 사업관리지원임대(77.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8.7%) 임금근로자의 상대임금은 전산업 평균수준보다 낮고, 제조업(117.3%)은 평균수준 이상임(2018년 기준).

7) 최저임금 근로자 중 100~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4%,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비중은 1.9%에 불과함.

하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임. **KL**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8)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임시직, 여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률(%)			복지혜택 수혜율(%)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전산업 평균	69.8	66.1	75.5	73.9	70.4	62.8	48.1
임시직	14.8	21.4	22.5	17.2	23.6	5.9	8.1
여성	23.9	29.8	30.7	29.0	30.8	14.9	12.7
5인 미만 사업체	13.4	17.9	18.3	17.8	26.5	8.4	7.6